

’90년도 식품위생

감시제도와 지침

보건사회부 위생관리과
사무관 정우성

I 위생감시의 의의

먼저 위생의 정의를 보면 1934년 12월 보건의료 교육지에 미국의료용어협의회의 보고서 상에 「위생(Hygiene)은 건강한 삶에 적용되는 과학」이라 하였으며, 즉 위생은 건강한 삶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는데 기초과학의 지식이라고 하였다.

여기서 기초과학의 지식은 건강을 측정할 수 있는 기초적 지표가 될 수 있는 근거를 말하는 것이다.

L.D.White는 「감시(Inspection)란 일정한 기준에서 보다 특정사물의 상황을 검사하고 평가하는 것」이라 하였다.

이러한 기준은 때로는 법률의 규정에의하거나 때로는 법률에 기초를 둔 규칙의 형으로 나타낸다. 그리하여 감시의 본질은 사물의 상황을 관찰하여 그 상황이 일정한 기준이나 방침에 합치하는가의 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판단이 일정한 기준에 합치되지 않는 것은 객관적인 인정을 받아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식품위생감시에 관한 본체를 살펴보면 그 역사도 짧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911년 한일합방후 위생상 유해음식물과 유해물을 취제규칙이 시행되었으며, 이때에는 감시라기보다 사법상의 직무집행이었으므로 음식물로 인하여 인체에 유해를 끼친 경우에는 경찰이 음식물취급자를 출두시켜 취체하여 조사처리 한 것으로 경찰식품위생행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며, 그 후 1945년 해방이 되면서 미군점령에 의하여 식품접객

업소에 국한하여 과도기 식품위생행정을 수행하였다.

1962년 1월20일 법률제1007호로 식품위생법이 제정공포되면서 현대식품위생행정으로 발전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 법의 목적은 식품으로 인한 식중독과 같은 유해를 방지하고 식품영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여 국민보건의 증진에 이바지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하여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생감시를 행할 수 있도록 법률로 규정되어 이를 식품위생감시원이라 부르게 된것이다.

위생감시원이 직무를 능률적으로 성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감시요령은 절대필요하다. 위생감시는 감시의 중요도를 측정하여 사업의 우선 순위를 선정하고 방침에 따라 국민건강에 유해요소를 제거하기 위한 예방적 감시 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행정권력을 배경으로 공권력을 발동하는 행위이다. 이처럼 예방적 감시는 현장에서 기초적 과학적 지식을 가지고 유해요소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데 필요한 조치로서 행정권의 배경없이는 단독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면도 있으므로 양자는 상호 유기적 관계를 항상 유지하고 있다.

그리고 위생감시원의 역활은 법규에 의한 명확한 근거에 의하여 위생감시 행정이 수행되어야 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특히 위생감시원은 확정력을 보장할 수 있는 중

표를 상시 휴대, 업무집행상 필요시에 반드시 제시되어야 하며, 이 중표 즉, 식품위생감시원증 또는 공중위생감시원증이 없이 일정한 법률규정을 위반하여 행한 행위에 대하여 적발하였다 하더라도 그 행위자체가 당연 무효가되고 또한 상대방으로부터 업무의 집행제지를 당하여도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기술면에 있어서의 위생감시는 고도의 경제성장과 첨단기술의 발달로 새로운 기술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국제경쟁력도 날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그러므로 식품위생도 역시 기술적감시를 수행할 수 있게 전환되어야 되는 것 이므로 우리나라의 전문요원의 인력을 점차적으로 확보해 나갈방침이나 아직은 그 자질의 문제가 요원하다 하겠다. 아물든 감시는 기술감시가 중요하다. 일정기준에 합치한가 또는 분명한 기준은 없어도 위생학적으로 보다 결함이 없느냐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종합분석평가하여 문제점에 대한 보완을 신속히 대처하며 같은 문제점이 재발하지 않도록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위생감시의 개념은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하는 공중위생감시보다 국민건강에 이바지하는 식품위생감시에 관하여 중점적으로 다룰까 한다.

소비자는 관능적으로 외관판단에 의존하여 식품을 선택하는 것이 어느 정도 가능하지만 위생적인 품질을 확인할 수 있는 적절한 수단을 갖지 못하므로 식품의 안정성 여부에 대하여는 거의 무력하다. 따라서 우리의 식생활의 안전성과 건전성은 식품을 취급하는 영업자를 믿을 수 밖에 없으므로 이들에게 높은 수준의 업무와 사회적 사명감을 강조하게 하는 것이며, 또한 식품의 안전성은 원료생산부터 최종소비자의 소비단계까지 하나의 쇠사슬로 연결되어 있으므로 그 중간의 어느 한 부분이라도 결함이 생기면 소비자의 건강을 위태롭게 하여 전체가 무너져 버리므로 최종식품의 과학적인 품질 보강을 위하여 식품전반에 대한 감시와 지도가 필요한 것이다.

II 90년도 위생관리 시책방향

- 보건사회부에서는 89년도부터 국민생활보호 차원에서 부정불량식품과 퇴폐변태 영업행위 등을 유관기관 협동으로 강력히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부정불량식품 유통이 상당히 감소하고 유통업소등의 퇴폐행위도 많이 줄어드는 등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으나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일부 몰지각한 악덕업자들에 의해 부정불량식품이 유통되고 퇴폐변태행위가 자행되고 있어 금년에는 부정불량식품과 퇴폐변태 행위등 범인성 유해환경은 국민생활보호 차원에서 유관기관 협동으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방침입니다.
- 감시업무는 중앙과 지방행정기관간의 감시기능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여 업무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극대화하는데 중점을 두었으며
- 업계의 자율관리 기능을 활성화하고
- 부정불량식품, 모니타제동을 확대하고 소비자 단체와의 긴밀한 협조체계등을 유지하는 등 국민감시기능을 강화하도록 하였습니다.

III 부정·불량식품 단속

1. 기본방침

- 적발건수 위주의 외형적인 감시를 지양하고 전문적인 계통감시를 실시하고
- 대형업소 및 국민 다소비식품을 중점적으로 단속관리 하며
- 시·도지사는 소관허가업종 및 품목에 대하여 책임관리 토록 하였음.

2. 세부추진사항

가 식품제조·가공업소 등 지도점검

- 1) 허가(신고)기관별 책임관리
 - 금년부터 식품제조·가공업소에 대하여는 허가(신고)기관의 책임아래 위생관리를 실시하되 시,도(시,군,구) 관장업소등 주요식품을 생산하는 대형업소('89년 기준 년간

업종매출액이 10억이상인 업소)에 대하여
서는 보건사회부에서도 위생관리를 병행해
서 실시하며

○ 허가(신고) 기관은 소관업소에 대한 년간
위생관리 계획을 수집 시행하고 보건사회
부는 분기별 1회 이행여부를 확인실시하고
있습니다.

2) 감사방법의 개선

○ 외형적 감사에서 전문적 계통감사로 전환
- 현행 -

- 개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 표시등 외형 적 감사 • 처벌위주의 사후 감사 • 일과성 감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료처리, 제조공 정, 자가품질 관리 등 전문적 감사 • 지도·교육 등 예 방적 감사 • 위반업소, 문제식 품에 대한 반복 확인 감사
--	--

○ 중점점검사항

- 원료의 구입과정에 대한 철저한 추적관
리를 통하여 부적합 원료 사용여부 확인
 - 부패, 변질, 미숙원료 사용여부
 - 유해, 유독 물질함유 또는 부착여부
 - 병원 미생물 오염여부
 - 병, 폐육의 사용여부
 - 불결하거나 이물질 혼입여부 등 원료
의 위생적 관리실태
 - 기타 관계규정이 정하는 사항 준수여
부
- 보존료 등 허용외 첨가물 사용여부
- 제조공정 전반에 걸친 위생상태
- 자기품질관리의 적정여부
- 제품의 보관상태

○ 시설, 표시 등 기타 준수사항

3) 점검반 편성 등

○ 각 시. 또는 자체 설정 및 인력을 감안하여

자체 계획 수립실시

○ 지도점검반은 : 시·도 본청 각 2개
반 이상 편성 운영
시·군·구(출장소
포함) 각 1개반 이상
편성 운영

지도점검반은 2인1조 편성운영하되 필요시
인원 증원 및 시·군·구 교체 점검실시

○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업주 및 식
품위생 관리인에게 점검시현지 지도

4) 점검회수

○ 식품위생법에 의거 년 1회 이상 임검을 실
시하되 자율지도 실시 업소에 대하여는 정
기임검 면제 가능

나. 제품수거점검

1) 기관별 중점수거점사 대상식품 선정 실시

○ 국민다소식품 중점 관리
○ 일반식품은 시·도가 중점 관리하되 계절적
성수식품등에 대하여는 필요시 보건사회부
가 직접 수거점사 실시

기관별 중점수거점사대상

구분	보건사회부	시·도
국민다소비식품	우유, 식용유지, 유산, 분 균음료, 건강식품, 국 산차, 라면, 소세지, 햄, 버터, 꿀, 수입식품	콩나물, 두부, 생선, 분 말류, 장류, 도시락, 냉면육수, 고추가루, 후추가루, 도라지, 더덕, 팔기, 포도, 순 대, 탁주, 약주, 두유, 쥐포, 어묵, 식용얼음, 빙과류, 끓김류(유 탕), 묵류

○ 식품접객업소 및, 식품조리, 판매업의 식품 또는
위생용품 등 수거 검사는 시·도 (시. 군. 구)의
업소 점검시 병행 실시

2) 수거점사 요령

○ 업종별, 품목별로 월별수거계획을 수립, 년중 수거
검사하되 검사기관의 능력을 판단하여 시. 군. 구별

수거일정 등 조정

○ 중복 수거지양

- 업종별, 품목별 수거대상을 순차적으로 수거
- 특정제조업체에 편중된 수거지양
- 의심스러운 제품의 신속, 정확한 검정을 위하여 사전에 검사기관과 협의(수거물량 등)
- 유통식품 수거시는 유상수거를 원칙으로 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 사전 확보

3) 수거회수

- 국민다소비식품은 월1회 이상 수거검사 실시
- 기타 유통식품은 분기별 1회 이상 수거검사 실시

4) 검사항목

- 식품위생법 제7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과 규격에 의함.
- 공중위생법은 법 제15조, 제27조 및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규격 참조
- 표시대상 첨가물의 사용 및 잔류량 초과 여부
- 기타 유독, 유해물질 함유여부
단, 검사의뢰기관은 검사기관의 검사능력의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별첨 "검체별 주요 시험항목"에 정한 검사항목만 검사할 수 있으며 필요시 검사항목을 검사기관과 협의 결정하고, 검사의뢰는 별첨양식 "제품검사의뢰서 및 제품인수증"에 의함

5) 검사결과 부적합 제품의 조치

- 폐기대상 등 부적합제품에 대하여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15조 규정에 따라 조치하되, 검사기관은 보사부, 특별시, 직할시, 도지사에게 시, 도지사는 시, 군, 구에 즉시 FAX 등을 이용 신속하게 통보하여 일제히 수거폐기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관련단체 및 언론매체 등을 홍보하여 소비자의 피해가 없도록 최선책을 강구.

번호	류별	종 류	품 목	시 험 항 목
2	유 가 공품	빙파류 아이스크림 분말류	빙파류	세균수, 대장균군
			아이스크림분말류	유지방분 (아이스크림분발, 아이스밀크 분말에 한함), 세균수, 대장균군
		우유류	우유류	산도, 무지유고형분, 유지방분, 세균수, 대장균군
			저지방우유류	〃
			유당분해우유	산도, 유지방분, 세균수, 대장균군
		가공유류	가공유,	유지방분, 세균수, 대장균군
			저지방가공	세균수, 대장균군
		산양유	유유음료	세균수, 대장균군
			산양유	산도, 무지유고형분, 유지방분, 세균수, 대장균군
			발효유류	발효류, 농후 발효유, 크림발 효류, 농후크림 발효류, 발효 버터유
		버터유류	발효류, 농후 발효유, 크림발 효류, 농후크림 발효류, 발효 버터유, 버터유분말	무지유고형분, 유산균수(효모수), 대장균군, 유지방분, 유산균수(효모수), 대장균군
			농축육류	농축우유 탈지농축 우유
			가당연유	유고형분, 유지방분, 세균수, 대장균수
			가당탈지연유	유고형분, 세균수, 대장균군
			유크림유	유크림, 유가공크림
		버터류	분말유크림	유지방분, 세균수, 대장균군
			버터, 가공버터	유지방분, 산가, 대장균군, 산화방지제
		자연치즈	자연치즈	유고형분, 유지방분,

번호	류별	종 류	품 목	시 험 항 목
1	아이스 크림 제품류	아이스크림류	아이스크림,	유지방, 세균수,
			아이스밀크	대장균군
		샤베트, 비유지방 아이스크림	세균수, 대장균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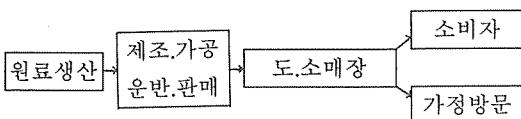
번호	류별	종류	품목	시험항목
3 청량음료	분유류	가공치즈	가공치즈	보존료, 대장균군, 크로스트리디움 유고형분, 유지방분, 보존료 효모 또는 곰팡이, 대장균군
		전지분유		유고형분, 유지방분, 세균수, 대장균군
		탈지분유		유고형분, 세균수, 대장균군
		가당분유		유고형분, 유지방분, 당분, 세균수, 대장균군
		혼합분유		유고형분, 유지방분, 세균수, 대장균군
	유청류	유청, 농축유청		유성분, 세균수, 대장균군
		유청분말		대장균군
	유당	유당		유당, 세균수, 대장균군
		조제유류	조제분유, 조제분유 과즙음료, 과죽음료 등	유성분, 조지방분 세균수, 대장균군 아미노산성질소, 납, 주석, 세균수, 대장균군
	과채류음료	탄산음료류	탄산음료, 탄산수 등	가스암, 납, 주석, 세균수, 대장균군
		두유음료류	두유액, 두유음료, 조제두유, 음료	전고형분, 세균수, 대장균군
	유산균음료	유산균음료		유산균수(효모수), 보존료, 대장균군
		혼합음료	혼합음료	납, 주석, 세균수, 대장균군

4	영양등식품	이유식	이유식	조단백질, 철, 비타민C, 인공감미료, 타르색소, 대장균군
		효소식품	곡류 및 배아효소	조단백질, α-아밀라아제프로테아제, 타르색소

다. 유통식품 위생관리

1) 실태

- 식품 유통구조의 다양화
 - 대량생산, 대량판매, 대량소비



○ 소비생활 양식의 변모

- 일반재래시장 이용에서 백화점 등 현대식 대형유통체인점 이용을 급증
- 조리과정 등이 복잡하지 않는 즉석식품 선호 등 소비생활의 편익욕구 증대
- 가공식품 다소비시대에 대비한 품질관리 범위 증가추세

○ 식품의 저장운반, 보존 및 진열방법 등의 다양화

- 다종, 다양한 제품 생산
- 제품별 기구, 용기 포장방법의 다양화
- 제품특성에 따라 저장, 보존 및 진열방법 등이 상이

2) 문제점

- 영세 식품제조업소가 저질식품유통 우려
- 무허가제품 및 무표시제품 상존
- 제품보존, 저장, 진열, 보관방법 등 준수사항을 이행치 않아 부패, 변질된 불량식품 유통상존
- 제품검사결과 규격기준 미달식품 상존
- 표시와 다른 내용물 및 특징 성분배합비율 등 용량미달 제품 유통
- TV, 라디오 신문, 간행물, 설명서 등 홍보매체를 통한 과대광고 및 선전으로 소비자를 혐혹 구매충동
- 소비자의 건강증진욕구 팽배로 인한 무분별한 건강식품류 선호경향
- 유명백화점, 슈퍼 등 대형유통업체에서 소비자 편의도모의 이유로 벌크판매 등 임의 소분판매행위 상존

* 검체별 주요시험 항목 중 유제품관련항목한 발췌 (편집자註)

3) 대 책

- 보사부, 시. 도 자체임검수거 목표설정과는 관계없이 부정불량품 수시 단속 실시
- 무허가식품 제조 유통감시체계 강화(모니터 망 설치운영, 고발센타활성화)
- 문제식품, 국민다소비식품, 계절적 성수식품 등 집중감시
- 전국 유통식품 기관별 목표설정 수거검사 강화
(부정 불량식품이 아닌 제품은 유상수거를 원칙으로 함)
- 과대광고(표시사항 포함) 및 선전행위 지속적 감시
- 소비자 이용율이 높은 백화점, 슈퍼 등 대형 유통업체 등 판매업소 집중단속

4) 세부추진계획

- 중점지도 감시대상
 - 백화점, 슈퍼마켓 등 체인점의 유통식품
 - 문제식품 및 국민다소비식품, 계절적 성수식품
- 주요 감시사항
 - 무허가 제품제조 및 판매
 - 부폐, 변질식품 판매
 - 진열, 보존, 보관방법 등의 적정여부
 - 무포장 및 무표시 제품판매
 - 소분금지 품목의 소분판매행위
 - 특정성분 함량미달 의심제품 추적조사
 - 문제식품, 국민다소비식품 등 수거검사 특히 '90.7.1 이후 새로이 실시되는 유통기한 표시 적정여부 확인 철저
- 유통식품 감시요령
 - 가정방문 판매 또는 판매장→소매장→직매점→도매점→대리점→당해 제조업소의 유통단계별 추적 정밀점검
 - 제조일자 (7.1이후 유통기한표시)위장변경 부착판매)
 - 유통기한 경과제품 진열판매
 - 냉장제품 상온 진열판매
 - 부폐변질식품 등 진열판매

- 불법수입 식품류 취급판매(무표시제품)

- 학교주변, 시장주변, 관광지 등 취약지역에 소재한 판매업소
 - 무허가제품 판매행위
 - 유통기한 경과제품 진열판매
 - 냉장제품 상온보관 진열판매
 - 자연식품류의 표백제 등 약제처리 판매행위
 - 무표시 등 표시기준 위반제품 판매
 - 계절적 성수식품 유통시기 등을 감안 적기 단속 실시

○ 처리방법

- 유통식품중 무허가제품 적출시에는 제조원 추적조사 즉시 고발조치
- 조사결과 타관할인 겨우 즉시 해당시도에 통보
- 특정성분함량 미달 등 용의식품 발견시에는 당해업소에 출장 원료구입에서 성분배합비율, 제조공정 등의 적정여부를 정밀조사
- 유통기한, 보관방법 등 기준과 규격이 정하여진 식품 또는 첨가물이 그 기준에 의하지 않은 제품에 대하여는 압류폐기조치

○ 수거검사결과 폐기대상품목

- 검사기관은 보사부 및 시. 도에 통보하고 각 시·도지사는 시·군·구에 통보 즉시 수거폐지조치

